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91
----------	-------

발의연월일 : 2026. 10. 6.

발 의 자 : 이주희 · 손 술 · 김남근
이수진 · 한창민 · 황정아
홍기원 · 김남희 · 이광희
용혜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의 확보와 이행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조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육비가 자녀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실효적 제재수단의 전면적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형량을 강화하고 유예기간을 단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출입국사실증명 등 채무자의 소재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요청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제4호 신설, 제16조제2항, 제27조제2항 신설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무부장관에 대한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에 관한 정보자료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제16조제2항 본문 중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을 “건강보험·국민연금”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양육비의 이행확보 및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제13조(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① ----- ----- ----- ----- ----- ----- -----.
②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① (생략)	4. <u>법무부장관에 대한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에 관한 정보자료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정보자료의 제공 요청</u>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어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27조(벌칙) ① (생략)

<신 설>

② _____

-----건강
보험 · 국민연금-----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u>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u>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u>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u> <u>③ (생략)</u>	<u>제기할 수 없다.</u> <u>③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
--	---